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69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10.

발 의 자 : 조은희 · 이성권 · 이만희
강명구 · 김용태 · 조승환
박정하 · 주호영 · 이종욱
신성범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2008년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인구 고령화로 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며,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노후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으로 기능하고 있음.

그러나 「2022년 장기요양실태조사」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92.6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17만원으로 2022년 기준 209시간 근무 최저임금 191만 4,440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, 이직률이 41%에 달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(안 제4조제3항 신설).
- 나.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국·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6조제1항제4호 신설).
- 다.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(안 제32조의3).
- 라. 인권교육 대상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서 수급자와 그 보호자로 확대함(안 제35조의3).
- 마.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,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(안 제35조의6 신설).
- 바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인건비 지출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고,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6조의2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4호의2 신설).
- 사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등의 평가 결과 3회 이상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(안 제37조제1항제9호 신설).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노인인구 및 지역특성”을 “노인인구,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”으로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항제3호 중 “처우에 관한 사항”을 “처우 개선,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방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노인인구,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고려한 국·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

제6조의2제1항제4호 중 “처우 및 규모”를 “처우, 규모 및 인력수급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

제32조의3 중 “6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제35조의3제2항 중 “수급자”를 “수급자와 그 보호자”로 한다.

제35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6(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에 관한 기준(이하 “적정 보수 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
 2.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에 관한 사항
-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36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3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54조에 따른 평가 결과 3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

제38조제6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”를 “요양급여 유형별 제공 방식과 필요 인력·장비·시설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”로 한다.

제54조의 제목 중 “장기요양급여”를 “장기요양급여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장기요양급여 내용을”을 “장기요양급여 내용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공하였는지”를 “제공하였는지와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장기요양급여의”를 “장기요양급여 등의”로 한다.

제69조제1항제4호의2를 제4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제36조의2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장기요양급여 등의 관리·평가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7조제1항제9호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평가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, 전문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</u>
<u>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.</u>	<u>④ -----노인인구,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.
<u>④ ~ ⑦ (생략)</u>	<u>⑤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)</u>
제6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6조(장기요양기본계획) ①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·2. (생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장기요양요원의 <u>처우에 관한 사항</u> <신 설> 4. (생 략) ② (생 략) 제6조의2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 1. ~ 3. (생 략) 4.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, <u>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</u> <신 설> 5. (생 략) ② (생 략) 제32조의3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<u>6년</u>으로 한다. 제35조의3(인권교육) ① (생 략)	3. -----<u>처우 개선,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 방안</u> 4. <u>노인인구, 지역특성 및 장기요양급여의 공공성을 고려한 국·공립 장기요양기관 확충 계획</u> 5. (현행 제4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의2(실태조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<u>처우, 규모 및 인력수급</u>----- 5. <u>장기요양급여의 지역별 수요 및 제공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32조의3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<u>5년</u>----- --. 제35조의3(인권교육) ① (현행과
---	--

②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<신설>

제36조의2(시정명령) 특별자치시

같음)

② -----

-----수급자와 그
보호자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6(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 기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보수에 관한 기준(이하 “적정 보수 기준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기관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기본급과 수당의 지급기준에
관한 사항

2. 연장근로·야간근로 및 휴일
근로에 따른 임금의 가산지급
에 관한 사항

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보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.

제36조의2(시정명령) -----

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<신설>

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의2, 제3호의5, 제7호,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~ 8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

제37조(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) ① -----

-----.

1. ~ 8. (현행과 같음)

9. 제54조에 따른 평가 결과 3

② ~ ⑨ (생략) 제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① ~ ⑤ (생략) ⑥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</u>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그 일부를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한다. ⑦·⑧ (생략) 제54조(<u>장기요양급여</u>의 관리·평가) ①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<u>장기요양급여</u>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·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이 제23조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·절차·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<u>제공하였는지</u> 평가를 실	<u>회 이상 연속하여 최하위등급을 받은 경우</u> ② ~ ⑨ (현행과 같음) 제38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<u>요양급여</u> -----<u>유형별 제공방식과 필요 인력·장비·시설 등을 고려하여</u> <u>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</u>----- ----- -----. ⑦·⑧ (현행과 같음) 제54조(<u>장기요양급여</u> 등의 관리·평가) ① ----- -----<u>장기요양급여</u> 내용과 <u>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</u>----- ----- --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제공하였는지와 제35조의</u>
---	---

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 ③ (생략) 제60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공단은 장기요양급여 제공내용 확인, <u>장기요양급여의 관리·평가</u> 및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등 장기요양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② (생략) 제69조(과태료)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4의2. (생략) 5. ~ 9. (생략) ②·③ (생략)	<u>6제1항에 따른 적정 보수 기준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-----</u>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제60조(자료의 제출 등) ① ----- --<u>장기요양급여 등의</u>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제69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4의2. <u>제36조의2제3호에 따른</u> <u>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내</u> <u>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</u> 4의3. (현행 제4호의2와 같음) 5. ~ 9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---	---